

제 243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9.11.12.)

조례 및 일반의안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주 현]

목 차

1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
2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5
3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4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5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4
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28
7	거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3
8	거창스포츠파크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38
9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44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49
11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	55

거창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10.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10. 21.

2. 제정이유

- 거창군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법령 위임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을 정함(안 제2조)
 - 1) 매년 수립·시행
 - 2) 추진사항 정기 또는 수시 점검
- 나.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안 제3조)
 - 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제1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9. 9.~9. 3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을 장려하며,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통하여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 하는 조례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 안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 발표에 따라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지침 및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10.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10. 21.

2. 제정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종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선정(안 제2조·제3조)
- 나.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운영(안 제4조~제8조)
- 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안 제9조)
- 라. 대상사업의 점검·관리 및 평가(안 제10조~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1,120천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9. 9. ~ 9. 30.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반영함(별지 제1호~제3호서식 성별구분항목)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 위임사항에 관하여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과 선정에 관한 사항을

- 안 제4조에서 제8조에서는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 안 제9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대상사업의 점검·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대한 실명 공개로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
- 군 주요 정책 수행 공무원에게 명예와 긍지를 부여하며, 책임소재의 명확화로 군정 신뢰 증진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305호, 2018. 11.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26.>

제2조(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3. (생략)

14.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 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10.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10. 21.

2. 개정이유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의 체납액 유무 검토 규정을 삭제하여 교부조건을 완화하고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사용 시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나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로페이 사용 근거를 마련함

3. 주요내용

- 가. 위임조례 입안원칙, 위임범위에 맞게 조문 정비
 - 1) 법령 재기재 사항 삭제(안 제4조·제6조)
 - 가) 보조대상 사업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재기재
 -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법 제32조의2제6항~제8항 재기재
 - 다) 실비보상 :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2) 정비 :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완화함(안 제13조제5호)

1) 삭제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유무 검토

2) 근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남

다.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등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1) 지방보조금 집행 시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

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의무사용 규정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7호, 위임행정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담당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9. 26.~10. 1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의 체납액 유무 검토 규정을 삭제하여 교부조건을 완화하고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사용 시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나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로페이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4조와 제6조에서는 법령 재기재 사항을 삭제 하였으며
- 안 제13조제5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유무 검토조항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49조의2에서는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결정기준의 범위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으로 축소되어 검토규정을 완화하고,

* 행정안전부 보조금 관리 기준에 보조금 교부 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여부는 검토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음

- 보조금 사용 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수단을 명시해 보조금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8. 10. 16.>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0. 16.>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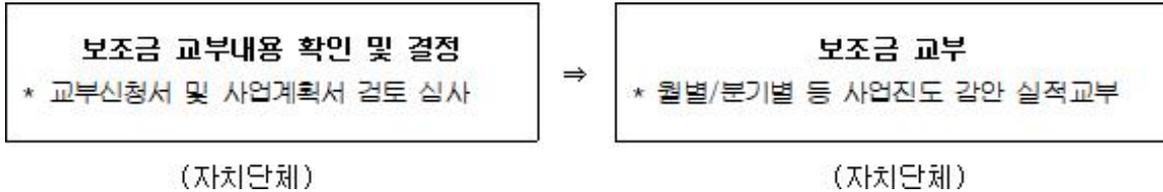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보조금 관리기준」

[시행 2017. 9. 25.] [행정안전부예규 제11호, 2017. 9. 25., 일부개정.]

~생략~

[3] 지방보조금 교부 (법 제32조의2)



○ 교부결정 및 교부전 사전 확인

- (대상사업 여부)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 확인
- (보조금 교부전 확인) 보조금 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
 - ※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진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사업의 완성 후 사업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등)
 - ※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

~생략~

[4]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법 제32조의6, 제32조의7, 영 제37조의4)

○ 지방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

※ 다만, 자치단체장은 사업보조자의 정산을 위해 개인보조사업자의 기존 통장 사용, 단체보조사업자의 2개 통장 사용 등에 따른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해 교육 등의 조치를 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함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외에 무통장 입금(계좌입금) 허용 가능

□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1.>

1. 인건비 성질의 경비
 2.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
- ② 도지사는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방보조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안건번호	의 건 16-0033	요청기관	경상남도	회신일자	2016. 2. 29.
안건명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기준으로 보조사업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규정할 수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요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보조사업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보조금 교부결정 기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보조금 교부결정 기준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이하 "사천시 조례안"이라 한다) 제15조제5호에서는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검토할 사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바, 이 사안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기준으로 보조사업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6항에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4년 11월 28일 개정 전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은 “법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조금의 교부결정 기준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었으나, 2014년 11월 28일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조례로 교부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6호 2015. 1. 1)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전 사전확인 사항으로 대상사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사천시 조례안에서 행정자치부예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확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조례에서 행정자치부예규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을 보조금 교부결정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적합하느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살피건대, 행정자치부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교부결정 사전확인 사항으로 “사업계획 및 …… 등” 과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 등” 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할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고 할 것이므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교부결정 및 교부전 사전확인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

는 것 외에 추가적인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려는 사항의 내용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열거된 사항과의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성질을 가진것인 경우에만 추가적인 교부결정 및 교부전 사전확인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전 사전확인 사항으로 “대상사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의 확인, 즉 해당사업이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인지 여부, 해당 사업계획서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도 해당사업이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인지와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사천시 조례안에서 정하고자 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는 해당사업이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인지 여부와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어 이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보조금 교부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천시 조례안」이 상위법령 및 행정자치부예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10.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10. 21.

2. 개정이유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거창 향노화사업, 정신 건강증진 및 자실예방 사업, 도로명 주소사업,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등 정부 및 군 시책 추진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함

3. 주요내용

가. 정원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 조정(안 제25조)

- 1) 정원 총수 증28명 : 702명 → 730명
- 2) 집행기관 정원 증28명 : 688명 → 716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4)

- 1)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증28명

가) 현행 : 628명(본청300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1명, 사업소37명, 읍39명, 면140명)

나) 조정 : 656명(본청309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8명, 사업소37명, 읍40명, 면151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4조·제29조·제30조·38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100백만원 확보,
2020년도 예산 1,232백만원 확보예정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9. 24.~10. 14.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25조에서는 정원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을 28명 증가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 안 별표4에서는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28명 증가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거창 향노화 사업,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 도로명 주소사업,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등 정부 및 군 시책 추진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12. 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 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 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

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10.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10. 21.

2. 개정이유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서비스 추진과 군민 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른 면 기관 명칭을 변경함

3. 주요내용

- 가. 면 기관 명칭이 모두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 정비함(안 제명·제1조·제2조)
- 나. 면 기관 명칭 변경함(안 별표)
 - 1) 웅양면사무소 ⇒ 웅양면 행정복지센터
 - 2) 고제면사무소 ⇒ 고제면 행정복지센터
 - 3) 북상면사무소 ⇒ 북상면 행정복지센터
 - 4) 마리면사무소 ⇒ 마리면 행정복지센터
 - 5) 남하면사무소 ⇒ 남하면 행정복지센터
 - 6) 신원면사무소 ⇒ 신원면 행정복지센터
 - 7) 가북면사무소 ⇒ 가북면 행정복지센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9. 24.~10. 1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거창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제명과 면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명,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면 기관 명칭이 모두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 안 별표에서는 면 기관 명칭을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서비스를 추진하고, 군민 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면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결정한다.

1. 특별시·광역시 및 도: 시·군 또는 자치구
2.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3. 특별자치시 및 시·군·자치구: 읍·면 또는 동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안건번호	의 18-0240	견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회신일자	2018. 11. 22.
안건명	자치구 조례의 제명(題名)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명칭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요지 자치구 조례의 제명(題名)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명칭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자치구 조례의 제명에 광역시의 명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나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유 조례의 제명(題名)은 그 조례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그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 					

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고 자치법규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해야 하나, 자치구 조례의 제명에 반드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명칭을 포함시키도록 강제하는 법령상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령과 달리 **조례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적용범위로 하여 관할 구역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지역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면서,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자치구와 관련된 관할 구역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자치구의 조례 역시 제명을 통해 그 적용 범위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 해당 자치구가 소재한 위치를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의 제명에 자치구가 소재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명칭을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에 그 조례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다른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나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제정한 동일한 제명의 조례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는 점, 입법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일관성 있는 입법 형식을 통해 입법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의 경우 **자치구의 제명에 해당 광역시의 명칭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생략)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 · ④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10. 2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10. 21.

2. 제안이유

-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계획 따라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공성을 갖추고 지역사회 노인복지 네트워크의 중심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 대상사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나. 사업 주요내용
 - 노인맞춤 돌봄 대상자 조사
 - 대상자별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인력(서비스관리자, 생활관리사) 채용·관리·운영

○ 서비스 제공

- 직접 서비스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 연계 서비스 : 민간후원자원 지원

다. 위탁기간 : 2020. 1. 1. ~ 2020. 12. 31.(1년)

라. 수탁자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내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마. 위탁기관 : 3개 기관

구 분	해 당 권 역	수행기관
1권역	거창읍(대평리, 김천리, 송정리, 장팔리, 정장리)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1개소
2권역	거창읍(대동리, 서변리, 동변리, 학리, 양평리) 주상면, 가조면, 가북면, 웅양면	1개소
3권역	거창읍(상림리, 중앙리, 가지리) 마리면, 위천면, 북상면, 고제면	1개소

바.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보건복지부 심사표에 의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필요성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에 따라 2020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안정적·성공적인 정착을 꾀하기 위함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지침(2019. 9. 9.)

다. 추진현황

- 2019. 10. 1.(화) : 민간위탁관련 주례회의 보고
- 2019. 10. 4.(금) : 수행기관 모집 공고
- ※ 공고기간 : 2019. 10. 4. ~ 10. 18.

라. 향후계획

- 2019. 10월 말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9. 11월 초 : 수행기관 계약 체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현 노인돌봄사업의 개별 사업 추진으로 중복과 누락 등 사업수행의 비효율성과 서비스대상의 돌봄욕구 충족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 6개 사업을 통합하여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2020년부터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운영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안정적·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노인복지법」

-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10. 2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10. 21.

2. 제안이유

-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2019.12.31.) 및 2020년부터 여성가족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대상 :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1길 170
- 다. 사업내용
 -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교육상담·문화 등 다양한 통합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가족관계 개선, 부모역할 지원 등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라.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 마.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
- 바. 수탁자격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에 의한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 단체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운영 함으로써,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다양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증진을 위함

나.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22조

다. 추진일정

- 군의회 동의 : 2019. 11월
- 모집공고 및 접수 : 2019. 11. 15. ~ 11. 29.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19. 12월 중
- 지정 및 위탁계약 체결 : 12월 중

라. 소요예산 : 292백만원(국비146 도비43 군비103)

5.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예정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가족의 유형별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거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위탁사무 및 조건으로

-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교육상담문화 등 다양한 통합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가족관계 개선, 부모역할 지원 등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있으며

○ 검토의견으로는

건강한 가정 유지를 위한 다양한 통합서비스제공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문지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 2. 1.]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거창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10.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10. 21.

2. 요구이유

- 거창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의 민간위탁계약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한 위·수탁계약 절차를 이행코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테니스장을 위탁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대상사무 : 거창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의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 나. 시설현황
 - 테니스장

계	테니스장		부대시설		
	인조잔디코트	하드코트	관리사무소	조명시설	펜스시설
12면	6면	6면	1층 140.55㎡	12개	7829㎡



다.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라. 수탁자격 :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

마.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바. 예산지원 : 없음(테니스장 사용료로 운영)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테니스장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군민여가생활의 개선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나. 향후계획

○수탁기관의 선정(공개모집): 2019년 11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6~9명) : 2019년 12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정 : 2019년 12월

○위탁계약 체결 : 2019년 12월

○위탁운영 : 2020년 1월 1일

다. 위탁운영 선정계획 : 따로 붙임

라.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수탁자격 및 기간)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3조(관리위탁), 제25조 준용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준용

5.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군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바람의 하나로 각종 스포츠를 즐기고 있으며 그 중 테니스는 대중화되어 많은 군민들이 스포츠파크내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 주요내용은

- 거창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및 부대시설의 관리이며

○ 검토의견으로는

군민여가생활의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테니스장 관리운영은 전문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2018.10.06.] [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 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항전부개정 2014.10.0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2014.10.01)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항전부개정 2014.10.01 2015.12.10.)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14.10.01. 2015.12.10.)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2014.10.0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 제23조(체육시설 위탁·위임)**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체육시설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제16조에 따른 그 소재지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를 위임한다.(조전 부개정 2018.10.31.)

[재 단 법 인 거 창 군 장 학 회 출 연 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9. 10. 2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9. 10. 21.

2. 제안이유

-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 교육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대 상: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사장 구인모)
- 사업비: 665,0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20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백만원)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액	2020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20년	665	665	665			665	

- 사업내용: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등

4. 부서 의견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장학사업의 출연금 지원으로
- 거창군의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거창의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출연금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붙임 1
- 출연 기관현황: 붙임 2

6. 검토 의견

본 출연안은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장학사업의 출연금 지원으로

○ 주요내용은

-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등이 있으며

○ 검토의견으로는

거창군의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거창의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출연금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관련법령 발췌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국 인구교육과) (시행일 : 2019.04.03)

(제정) 2005.10.05 조례 제1761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전부개정) 2011.01.05 조례 제2014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228호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4조

(일부개정) 2019.04.03 조례 제249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할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의 설립과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정관)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제4조 삭제<2019.4.3.>

제5조 삭제<2019.4.3.>

제6조 삭제<2019.4.3.>

제7조(사업)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3. 교육여건 개선사업
4. 국내·외 청소년과의 교류사업
5.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장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
3.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경영을 통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재정지원)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타조례개정 2014.12.31.)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지원) 군수는 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장학회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장학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인력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인력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장학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장학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2019.4.3.>

부칙 <전부개정 2011.01.05, 조례 제20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부칙(조례 제2496호 201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연기관 현황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근거	법 률 :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55-940-8812 홈페이지 : www.gcdream.kr			
주요연혁	설립연도 : 2005. 12. 16. 장학기금 100억원 달성 : 2009년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19. 9.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7명		0명	17명			
임 원 (‘19. 9.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 사 장	구○○	거창군수	당연직(재직기간)			
	상임이사	신○○	前) 민주평통회장	2018.12.03. ~ 2020.12.02.			
	비상임이사	이○○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당연직(재직기간)			
		이○○	아림노인요양원 원장	2017.12.20. ~ 2019.12.19.			
		송○○	前) 창호초등학교 교장	2017.12.20. ~ 2019.12.19.			
		김○○	덕유농산 대표	2017.12.20. ~ 2019.12.19.			
		오○○	前) 거창중학교 교장	2018.12.03. ~ 2020.12.02.			
		최○○	아림인쇄사 대표	2018.12.03. ~ 2020.12.02.			
		백○○	거창한뉴스 대표	2018.08.22. ~ 2020.08.21.			
		양○○	前) 의용소방연합회 회장	2017.12.20. ~ 2019.12.19.			
		백○○	거창농산 대표	2017.12.20. ~ 2019.12.19.			
		송○○	거창군이장자울협의회 회장	2018.08.22. ~ 2019.12.19.			
		김○○	거창푸드종합센터 이사장	2017.12.20. ~ 2019.12.19.			
		이○○	前) 함께하는 거창 대표	2017.12.20. ~ 2019.12.19.			
	감 사	백○○	前) 교장	2018.01.03. ~ 2020.01.02.			
유○○		푸른산내들 이사	2017.12.20. ~ 2019.12.19.				
	표○○	前) YMCA 이사장	2017.12.20. ~ 2019.12.19.				
주요기능	-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필요한 지원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10,00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1,421 (직전연도말 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재무현황 (백만원) ‘18.12.31기준	자산	10,686 (자산 총액)
	예산액 ²⁾	11,083	11,122	11,299		부채	0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³⁾	665	665	665		자본 ¹⁾	10,686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8. 12. 31. 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234			1,038		196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 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9. 10. 2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9. 10. 21.

2. 제안이유

-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 관련 사업 수행을 지원함.

3. 출연개요

- 가.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 나. 대 상: 한국지방세연구원(대표 공석)
- 다. 사 업 비: 4,038천원
- 2020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천원)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액	2020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20년	4,012	4,038	4,038			4,038	

라. 사업내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4. 부서 의견

- 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수입·지출 결산은 외부감사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며,
- 나.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구제업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출연기관 현황 : 붙임 2
다. 기타 참고자료(출연금 배정 협조공문 등): 붙임 3

6. 검토 의견

본 출연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등으로

○ 검토의견으로는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수입·지출 결산은 외부감사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어 연구원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 시스템 운영, 구제업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발취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39호, 2018. 12. 24., 일부개정]

-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

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849호, 2019. 6. 11., 타법개정]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출연기관 현황 】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세기본법제151조 내지 제152조			전화번호 : 02-2071-2798			
	시행령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		
인원현황 (‘19. 6 현재)	계		정규직		비정규직		
	65명(11명)		65명 (11명)		-		
임 원 (‘19. 6 현재)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 사 장	허 ○ ○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17.12. 22. ~ 2020.12. 21.		
	부이사장	황 ○ ○	충청남도 논산시장		2019. 2. 28. ~ 2020. 2. 27.		
	원 장	공 석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당 연 직		
	이 사	이 ○ ○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		당 연 직		
	이 사	김 ○ ○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19. 2. 28.~2020. 2. 27		
	이 사	이 ○ ○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2019. 2. 28.~2020. 2. 27		
	이 사	김 ○ ○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2019. 2. 28.~2020. 2. 27		
	이 사	김 ○ ○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2019. 2. 28.~2020. 2. 27		
	이 사	박 ○ ○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구청장		2019. 2. 28.~2020. 2. 27		
	이 사	김 ○ ○	충청북도 청주시 부시장		2019. 2. 28.~2020. 2. 27		
	이 사	윤 ○ ○	전라북도 무주군 부군수		2019. 2. 28.~2020. 2. 27		
	이 사	금 ○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9. 2. 28.~2020. 2. 27		
	감 사	김 ○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노 ○ ○	전라북도 순창군 부군수		2018. 2. 28.~2020. 2. 27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68,756 (2011~2019)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재무현황 (백만원) ‘18.12.31기준	자산	18,188 (자산 총액)
	예산액	9,986	13,719	13,164		부채	4,456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7,570	12,102	10,844		자본	13,732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8.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1,166			8,603		2,563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 검토보고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9. 10. 2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9. 10. 21.

2. 제안이유

-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차질 없는 문화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 출연개요

- 가. 근거법령 : 「지역출자·출연법」 제20조,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 나. 대 상 : 거창문화재단(이사장 구인모)
- 다. 사 업 비 : 691,0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20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백만원)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액	2020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20년	906	691	691	-	-	691	-

라. 사업내용

- 문화재단 사무국 인건비(직원 4명, 기간제 2명) 지원
- 문화재단 사무국 경상경비(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지원

4. 부서의견

가.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2017년 설립이후 운영 4년차에 접어드는 거창문화재단은 각종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및 한마당대축제 기획·운영 업무를 비롯하여

나.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들의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거창문화센터 관리 등을 위한 예산을 출연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 출연금 개요 :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 최근 3년간 운영비 지원현황
- 전년도와 달라진 점 :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전환
-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
- 도내 문화재단 예산현황 비교

6. 검토의견

가. 거창문화재단은 최근 3년간 운영되어 오며,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로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거창한마당대축제를 군민 화합의 장으로 이끄는 등 재단의 운영이 안정화 되었기에,

나. 재단 설립 초기 군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보조금으로 일괄 지원하던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등의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전환하여 인력 및 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다. 수익성 사업(대관료, 입장료)인 문화공연 및 전시사업과 거창한마당대축제 등의 문화사업은 기존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유지하고,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들의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는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4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출연기관 현황 】

거창문화재단

설립근거	법률 : 「민법 제32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조례 :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화번호 : 055-940-8460		
					홈페이지 : www.gccf.or.kr		
주요연혁	법인설립허가 : 2017. 1. 12.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19. 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0명		6명		4명		
임원 (‘19. 9.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구○○	現 거창군수		재직기간(2018.7.2~현재)		
	비상임이사		이○○	現 거창군 문화관광과장		재직기간(2019.1.1~현재)	
			이○○	前 아림예술제위원회 위원장		2년(2019.1.18~2021.1.17.)	
			이○○	거창문화원장		2년(2019.1.18~2021.1.17.)	
			민○○	거창예총 회장		2년(2019.1.18~2021.1.17.)	
			박○○	거창전수관장		2년(2019.1.18~2021.1.17.)	
			신○○	前거창농협조합장		2년(2019.1.18~2021.1.17.)	
			곽○○	거창문화원 임원		2년(2019.1.18~2021.1.17.)	
			백○○	아림예술제위원회 감사		2년(2019.1.18~2021.1.17.)	
			김○○	거창문화원 이사		2년(2019.1.18~2021.1.17.)	
			이○○	경남일보 차장		2년(2019.1.18~2021.1.17.)	
			신○○	사색의향기 문화원 거창지부장		2년(2019.1.18~2021.1.17.)	
			김○○	거창예총 수석부회장		2년(2019.1.18~2021.1.17.)	
			정○○	거창미협 윤리이사		2년(2019.1.18~2021.1.17.)	
감사		강○○	現 거창군 재무과장		재직기간(2019.7.19~현재)		
		이○○	세무사		2년(2019.1.18~2021.1.17.)		
주요기능	문화공연 및 전시 기획·운영, 문화아카데미 운영, 거창한마당대축제 기획·운영 등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236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50 (2017년 설립 시 기본재산 출연)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재무현황 (백만원) ‘18.12.31기준	자산	425 (자산 총액)
	예산액 ²⁾	3,458	2,265	2,681		부채	188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³⁾	3,095	1,907	2,557		자본 ¹⁾	237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8.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015			2,080		-61	

참 고 사 항

① 출연금 개요 :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계속사업]

- 사업목적 :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한 차질 없는 문화재단 운영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사업장소 : 거창문화재단 일원(거창문화센터)
- 사업비 : 691,000천원 / 출연금
- 증감사유 : 감)215,300천원 / 전년 당초예산 대비
 - 직원 4명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감축 편성 (감158,329천원)
 - ※ 미채용 인원(4명) : 사무처장 1명, 문화사업2단 3명(단장 1, 단원 2)
 - 여비, 업무추진비, 관서업무비 과다 편성분 삭감 (56,971천원)
- 사업내용 : 문화재단 사무국 인건비, 경상경비(운영비, 관리비 등)

세부사업	2020년	2019년	사업내용
문화재단 운영 지원	691,000	906,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280,21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 원 : 220,689천원 / 4명(문화사업1단장 1, 단원 3) * 단원 : 무대예술전문인(조명, 음향) 2명, 문화사업업무 1명 - 기간제 : 59,521천원 / 2명(환경관리 1, 사무보조 1) ○ 경상경비 : 410,79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리후생비 : 27,400천원 / 4대보험, 직급보조비 등 - 일반운영비 : 137,490천원 / 소모품, 임차료, 당직비 등 - 공공요금 : 139,651천원 / 우편, 상하수도, 전기료 등 - 시설유지비 : 35,000천원 / 정화조, 공조기 청소 등 - 회의운영비 : 13,930천원 / 참석수당, 심사수당 등 - 여비교통비 : 37,319천원 / 국내여비 및 교통비 등 - 업무추진비 : 16,000천원 / 시책업무 추진 - 관서업무비 : 4,000천원 / 재단 운영 업무추진

② 최근 3년간 운영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내용
지원금액	544,130	544,130	906,300	691,000	재단 사무국
전년대비증감	-	-	증) 362,170	감) 215,300	인건비,
예산과목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307-03)			출연금(306-01)	시설유지비 등

③ 전년도와 달라진 점 :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전환

○ 전환 필요성

- 거창문화재단은 2017년 1월 설립되어 3년간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 까지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뮤지컬, 가요 콘서트 등)과 전시로 군민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매년 색다른 콘셉트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거창한마당대축제를 군민화합의 장으로 이끄는 등 여러 분야에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
- 이에 재단 설립 초기에 군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보조금으로 일괄 지원하던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등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전환하여 인력 및 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같은 이유로 도내 타 문화재단 모두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 중임

○ 전환 시 문제점

- 재단의 예산 집행 자율성이 높아지면서 예산 집행 투명성 저하 우려

○ 해결방안

- 현재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으므로 예산집행 투명성 보장
- 출연금에 대하여는 정산 의무 없으나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문화관광과에서 사후정산 지속 운영, 관리 감독 철저

④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

구 분	출연금	보조금
정 의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	지자체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자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등
일반법적 근거	없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별법적 근거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필수요소 아님
용도 지정	사용 용도 지정 없음 (단, 목적 출연금만 용도 지정)	사용용도 지정 필수
예산과목	306-01(출연금)	307-03(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수입	재단 자체 수입으로 함	군으로 반환함

5 도내 문화재단 예산 비교 (2019년 당초예산 기준)

○ 보조금은 없으며, 출연금 및 경상적 위탁사업비 혼용 지원

(단위 : 천원)

기관명	지원성격	지원금액	내용(예산서 부기명)	부서
창원문화재단	출연금	13,680,000	- 재단 운영 13,480,000 - 예술작품 구입 200,000	문화예술과
김해문화재단	출연금	18,247,103	- 출연금 18,247,103	문화예술과
통영문화재단	출연금	2,851,298	- 인건비 1,638,106 - 운영비 372,624 - 통영국제음악당 시설비 840,568	문화예술과
	경상적위탁	1,506,550	- 통영국제음악제 1,210,000 -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140,000 - 윤이상동요제 50,000 - 꿈의오케스트라 운영지원 106,550	
사천문화재단	출연금	2,409,647	- 재단 출연금 2,409,647	문화관광과
밀양문화재단	출연금	5,441,093	- 재단 출연금 5,441,093	문화관광과
거창문화재단	보조금	906,300	- 재단 운영지원(인건비, 경상경비) 906,300	문화관광과
	경상적위탁	1,651,300	- 문화공연 및 전시 865,000 - 거창한마당대축제 786,300	

- 우리 군은 통영시와 같이 운영비는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 그 외 문화공연 및 전시, 거창한마당대축제 등의 문화사업은 기존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그대로 유지할 계획임
 - 문화공연 및 전시사업은 수익성 사업(대관료, 입장료)이므로 당해 수익금을 군으로 반환받기 위해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유지하는 것임 (출연금으로 전환 시 군으로 수익금 반환 불가)